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편 집 : 문화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61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제 398 호

1973.9.1

# 시 보

차 례

이 영등보존(보존) 피크로  
권립으로...  
1973.9.1.  
서울특별시 서민과장

◎ 고 시

제 145 호 : 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허가 ..... 3

제 146 호 : 서울대학교부지내 칠거민점 착을  
위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 3

제 147 호 : 서울도시계획시설 ( 도로 ) 결정  
및 지적승인 ..... 4

제 148 호 :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 궁동 - 은수동 도로신설 ) ..... 4

◎ 공 고

제 163 호 : 화양추가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환지계획변경 및 환지에정지정공고 ..... 5

◎ 사 령 ..... 6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145 호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으므로 하천법 시행령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다.

1973. 8. 27.

서울특별시장

1. 허가년월일 1973. 8. 27.

2. 허가장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삼정동 일대

3. 점용면적 (공작물 설치면적) 93,268 m<sup>2</sup>

4. 점용 및 공작물 설치 목적 : 잠실지구 외수침입 보호

5. 공종 및 수량 가. 밀다 심공 1,373 m

나. 호안부력불입 2,776 m<sup>2</sup>

다. 도수로 20 개 소

라. 배불입 54,436 m<sup>2</sup>

6. 점용기간 : 허가일 ---- 1973. 12. 31.

7. 수 허가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고시제 146 호

서울대학교 부지내 철거민 정착을 위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시행 허가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인 서울대학교 부지내 철거민 정착을 위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제 123 호 ( 73.4.4 ) 에 의하여 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3. 8. 29.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72-1의 2필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서울대학교 총장 한심석

4. 시행면적 : 9,132 평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년월일 가. 착수 : 1973. 8.

나. 준공예정년월일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생략)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생략)

8. 인가비용 : 별첨 인가도서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47 호

서울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가. 노선신설 조서

(도로) 결정과 지적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제 123 (73.4.4) 호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석대문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73. 8.30.  
서울특별시 장

구분	등급	류번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중	점	비	고
신설	소로	3		6	28 m	전농동	597-17	전농동	597-16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48 호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궁동-온수동도로신설)

1. 서울특별시고시제 128 호 (73.7.27) 로 결정한 도시계획사업 (궁동 199-9 ~ 온수동 75간 도로신설) 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허가 하였기

123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를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 및 온수마을 종합 개발추진위원회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73. 8. 29.  
서울특별시 장

가. 사업시행지 : 영등포구궁동 199-9 ~  
온수동 75

나. 사업의종류및 명칭 : 원호병원앞 ~ 온  
수마을간 새마을 도로개설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및 주소 : 온수마을  
종합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라. 시행규모 : 계획 폭원 15미터내에서  
B = 8 미터, L = 1,230 미터

마. 사업의착수. 준공예정년월일

1) 착 수 : 1973.8.

2) 준공예정일 : 1973.11.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의  
의 권리의 명세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제 4조 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첨)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제 163 호

화양추가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환지계획변경 및 환지역  
정지 지정공고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화양추  
가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 및

제 55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  
탁에 관한 규정 제 25조 제 11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역  
지를 지정하였기 동법제 57조 제 1  
항에 의한 사용수익의 권한이 토  
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부  
여 됨을 공고 한다.

다만, 정지공사나 기타 다른 사  
유로 인하여 환지역정지의 사용수  
익을 할 수 없는 토지는 공사가  
완료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가 해  
소된 날로부터 사용 수익하게 됩  
니다.

2. 환지역정지 지정서 및 지정도는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과 및  
성동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  
람에 공한다.

3. 이 공고에 따른 서류 송달은  
별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될것이나  
수령하지 못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한다.

1973. 8. 28.

서울특별시장

사 령

◎ 1973.8.10

위생연구소 지방보건 이봉자  
연구사보 연구사보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73.8.25

순찰담당관실 지방행정 김수철  
사무관 사무관  
순찰담당관직무대리를 명함.  
2 호봉을 급함.  
지방서기관에 임함.

단속과 지방행정 조동하  
사무관 사무관  
단속과장직무대리를 명함.  
4 호봉을 급함.  
지방서기관에 임함.

새마을지도과 지방행정 문무봉  
사무관 사무관  
새마을지도과장직무대리를 명함.  
2 호봉을 급함.  
지방서기관에 임함.

관악구 지방행정 신성호  
사무관 사무관  
관악구부청장직무대리를 명함.  
3 호봉을 급함.  
지방서기관에 임함.

◎ 1973.8.27

동대문구 지방행정 우영애  
주주 지방행정 주주  
성북구군무를 명함.

도봉구 지방행정 김준희  
주주 지방행정 주주  
영농출장소군무를 명함.

부녀과 지방행정 신석재  
주주 지방행정 주주  
구획정리 1과군무를 명함.

오류부녀보 지방행정 이종훈  
호지도소 주주 지방행정 주주  
영등포병원군무를 명함.

양지회관 지방행정 임달수  
서기보 서기보  
성동구수도사업소군무를 명함.

부녀사업관 지방행정 이인표  
서기보 서기보  
농부병원군무를 명함.

중구 지방행정 최응만  
주주 지방행정 주주  
중구군무를 명함.

8 호봉을 급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양지회관 지방행정 안복희  
주주 지방행정 주주  
양지회관군무를 명함.

4 호봉을 급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아동과 지방행정 구영숙  
주주 지방행정 주주  
아동과군무를 명함.

8 호봉을 급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근우회관 지방행정 주사보 박은서 근우회관근무를 명함. 4호봉을 급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세정과 지방행정 주사보 조성배 부녀과근무를 명함. 3호봉을 급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소년직업 지방행정 보도소 주사보 주무경 소년직업보도소근무를 명함. 5호봉을 급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부녀과 지방행정 서기 임상화 부녀과근무를 명함. 11호봉을 급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종로구 지방행정 주사보 안희옥 종로구근무를 명함. 2호봉을 급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아동과 지방행정 서기 윤상숙 아동과근무를 명함. 11호봉을 급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용산구 지방행정 주사보 허식 용산구근무를 명함. 6호봉을 급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마포구 지방행정 서기 서후식 마포구근무를 명함. 6호봉을 급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용산구 지방행정 주사보 이영숙 동대문구근무를 명함. 2호봉을 급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아동과 지방행정 서기 강옥자 여자기술원근무를 명함. 6호봉을 급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주사보 정진순 서대문구근무를 명함. 2호봉을 급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부녀과 지방행정 서기 김용근 부녀상담소근무를 명함. 6호봉을 급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중 구 지방행정기 영등포구근무를 명함. 3 호봉을 급함.	박 혜 옥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동대문구 지방행정기 수도사업소 서 부녀과근무를 명함. 9 호봉을 급함.	정 영 숙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동대문구 지방행정기 중구 근무를 명함. 3 호봉을 급함.	조 영 현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영등포구 지방행정기 수도사업소 서 양서출장소근무를 명함. 9 호봉을 급함.	이 원 심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동대문구 지방행정기 부녀과근무를 명함. 11 호봉을 급함.	이 숙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은평출장소 지방행정기 은평출장소근무를 명함. 11 호봉을 급함.	남 상 화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성북구 지방행정기 성북구근무를 명함. 2 호봉을 급함.	김 애 탕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중 구 지방행정기 용산구근무를 명함. 7 호봉을 급함.	진 명 선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서대문구 지방행정기 수도사업소 서 오류부녀보호소근무를 명함. 8 호봉을 급함.	이 은 숙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종로구 지방행정기 종로구근무를 명함. 8 호봉을 급함.	윤 해 자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공보실 지방행정기 공보실근무를 명함. 9 호봉을 급함.	전 옥 주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서대문구 지방행정기 수도사업소 서 부녀사업관근무를 명함. 8 호봉을 급함.	강 영 섭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서대문구 지방행정기 서대문구근무를 명함.	윤하원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부녀과 지방행정기 부녀과근무를 명함.	손혜자
7호봉을 급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도봉구 지방행정기 도봉구근무를 명함.	채영숙	4호봉을 급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인사과 지방행정기 인사과근무를 명함.	김조자
6호봉을 급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영등포구 지방행정기 영등포구근무를 명함.	전영식	2호봉을 급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성동구 지방행정기 천호출장소근무를 명함.	김영란
4호봉을 급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동대문구 지방행정기 동대문구근무를 명함.	권정자	3호봉을 급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8호봉을 급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성동구 지방행정기 성동구근무를 명함.	원유숙	◎ 1973.8.28 영등포병원 지방간호 기원보시보 서봉선 본인 불출두로 인하여 73.8.20 자신규임용 (발령제 767호) 을 동일자로 취소함.	
7호봉을 급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아동과 지방행정기 아동과근무를 명함.	김봉래	아동과 지방행정 서기보시보 유희경 본인 불출두로 인하여 73.8.1 자신규임용발령 (발령제 699호)을 동일자로 취소함.	
4호봉을 급함.		◎ 1973.8.29 관 광 과 지방행정 주사보 이석중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p>◎ 1973.8.31. 도시가스 지방화공사 사업소 기사보시보</p>	<p>김영근</p>	<p>주택행정과 지방행정주사 윤형노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 의 규정에 의하여 3월간 감봉에 처함.</p>
<p>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중로 지방행정서기보 수도사업소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 의 규정에 의하여 3월간 감봉에 처함.</p>	<p>최백식</p>	<p>시민과 주사보 김우근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동원과근무를 명함.</p>
<p>관악구 지방행정서기보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에 처함.</p>	<p>강경구</p>	<p>종로구 지방행정주사 권정복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에 처함.</p>
<p>양서출장소 지방행정주사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p>	<p>양석환</p>	<p>영등포구 주사보 박용탁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 의 규정에 의하여 1월간 감봉에 처함.</p>
<p>도봉구 지방행정서기보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에 처함.</p>	<p>이범석</p>	<p>은평출장소 지방행정주사 김철근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p>
<p>성북구 지방행정주사보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에 처함.</p>	<p>서정관</p>	<p>성동구 지방행정주사 김영호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 의 규정에 의하여 3월간 감봉에 처함.</p>

◎ 1973.9.1

성 동 구 지방행정주사 김규택  
여자기술원 근무를 명함

2호봉을 급함

마포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김영분

여자기술원 지방행정주사 심근  
지방공무원법제 66조제 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1973.9월 1일그직을 면함

지방간호기원보 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성북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장은순

경 기 도 지방행정주사보 이학직  
서울특별시 전 직을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2호봉을 급함  
중구근무를 명함

지방간호기원보 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성동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서금자

감사관실 지방서기관 김수철  
서기관에 임함  
2호봉을 급함

1호봉을 급함

성북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이영자

서울특별시 감사관실 순찰담당관에 보함

지방간호기원보 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주 택 국 지방서기관 조동하  
서기관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시대분병원 근무를 명함

서영순

서울특별시 주택국 단속과장에 보함  
1973년 9월 1일

지방간호기원보 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영등포병원 근무를 명함

대 동 령

◎ 1973.9.5

권정자

장주식

지방간호기원에 임함

지방건축기원보 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최 근 희	지방건축지원보 시보에 임함	조 영 호
지방건축지원보 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1호봉을 급함		성동구영동출장소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김 기 수	지방건축지원보 시보에 임함	박 기 현
지방건축지원보 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1호봉을 급함		성동구영동출장소 근무를 명함	
중로구 근무를 명함	이 규 당	지방건축지원보 시보에 임함	강 청 일
지방건축지원보 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1호봉을 급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정 운 한	지방건축지원보 시보에 임함	김 광 수
지방건축지원보 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1호봉을 급함		도봉구 근무를 명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김 준 수	지방건축지원보 시보에 임함	김 원 응
지방건축지원보 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1호봉을 급함		송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유 영 배	지방건축지원보 시보에 임함	김 결 진
지방건축지원보 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1호봉을 급함		송구 근무를 명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			

<p>지방건축지원보 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p> <p>지방건축지원보 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p> <p>강원도춘성군 농림기사보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농림기사보에 임함</p>	<p>윤임호 2호봉을 급함 영등포구양서출장소 근무를 명함</p> <p>경상북도 농림지원보 김동주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p> <p>전상돈 지방농림 지원보에 임함 12호봉을 급함 서대문구은평출장소 근무를 명함</p> <p>홍은표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사보 이한규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7호봉을 급함 하수과 근무를 명함</p>
<p>서울특별시장</p>	